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67
----------	-------

발의연월일 : 2026. 5. 14.

발 의 자 : 조인철 · 이정문 · 이정현
김우영 · 박지혜 · 정준호
박희승 · 서삼석 · 박용갑
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광고나 플로팅 광고, 가입·이용 또는 해지·전환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다크패턴을 설계하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이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 또는 화면의 종료·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전기통신서

비스의 가입·이용·해지·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의2, 제50조제1항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 신설 및 제51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온라인 광고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매체의 화면에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에 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 또는 화면의 종료·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5의5.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5의6.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

제5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온라인 광고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5의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6. ~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생략)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

1. ~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 또는 화면의 종료·
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행위

5의5. 광고를 배포·게시·전송
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5의6.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
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
프트웨어로서 이용자와 전기
통신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에서 전기통신서비스
의 가입·이용·해지·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
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
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

6.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 ~ ⑥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온라인 광고사업자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